**화장품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별표4-1 [무첨가 등 무배합을 의미하는 용어]**

“무첨가”, “무배합”, “미사용” 등 어떤 종류의 성분을 배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용어를 표시할 경우에는 무엇을 배합하지 않았는지를 명시하고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1. 어떤 종류의 성분이 배합되지 않았는지 표시할 경우에는 해당성분 명칭을 병기한다.

예

파라벤 무첨가

논 에탄올

1. 어떤 종류의 성분 군에 속하는 성분 전체를 배합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경우에는 해당 성분 군을 병기한다.

예

타르 색소 미사용

자외선 흡수제 무배합

오일 프리

1. 착색제, 방부제 등을 배합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경우에는 방부제 등 배합목적을 병기한다. 단, 규약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지정 성분의 표시 명칭에 의해, 당해 성분의 배합 목적에 대해 일반소비자에게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부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

착색제 무첨가

방부제 컷

무향료

|  |
| --- |
| 주) 1  타르 색소, 자외선 흡수제 및 방부제로서 배합되는 성분은 의약품 의료기기법에 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각각 수재된 성분을 말한다.  주) 2  오일이란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및 미네랄 오일을 말한다. |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별표 4-2 [“알레르기 테스트 완료” 등의 테스트 완료에 관한 용어]**

“알레르기 테스트 완료” 등 테스트 완료에 관한 용어를 표시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라 사용한다.

1. 단점 표시를 비슷한 크기로 눈에 띄도록 주변에 병기할 것.

예

“알레르기 테스트 완료”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논 코메도제닉 테스트 완료”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코메도(여드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자극성 테스트 완료”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 캐치프레이즈로 하지 말 것